



제 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회원심사위원회 구성 등 예술원 운영 규정 정비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86호)

2025.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2
2. 회원의 임기 제한(안 제6조제1항)	7
3. 회원 수당 지급 폐지(안 제7조제2항 삭제)	9
4. 예술원상 선정 절차 규정(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계원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1. 7.

다. 회 부 일 : 2025. 1.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의 선출, 임기, 수당 및 예술원상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예술원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회원의 선출 및 예술원상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종신제로 운영되며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회원 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외부위원을 포함한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회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회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폐지하고, 예술원상 선정 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예술원 운영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삭제 및 제13조).

Ⅲ. 검토의견

1.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가. 개정안 요지

- 회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회원 또는 예술의 각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예술원의 회장이 위촉하도록 하되, 위원 중 회원은 5인 이내로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그 밖에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회원의 선출) ① (생략)	제5조(회원의 선출)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회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신설></u>	<u>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술원의 회장이 위촉하도록</u>

② <u>회원심사위원회의</u>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u>총회에서</u> 정한다.	<u>하되, 위원 중 회원은 5인 이내로 한다.</u> <u>1. 회원</u> <u>2. 예술의 각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u> ④ <u>그 밖에 회원심사위원회의</u> -----<u>대</u> <u>통령령으로</u>-----.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5조1)에 따르면,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하며,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술원은 회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예술원회원 선출 규정(예술원규정)’²⁾에 따라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와 회원

-
- 1) 「대한민국예술원법」 제5조(회원의 선출) ①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 2) 「예술원회원선출 규정(예술원규정)」 제4조(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 ① 각 분과에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해당 분과회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호선에 의하여 위원장을 정한다. 단, 제4조제4항의 경우에는 회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도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는 회원후보자를 선출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 심사요구(별지 3호 서식)한다.

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후보자를 추천·심사하고, 총회에서 회원 선출을 인준함³⁾.

- 분과별 예술원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를 두고,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회원후보자 선출을 의결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함.
- 또한, 분과별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에서 심사요구된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종합심사위원회를 둬.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술원회장이, 부위원장은 예술원 부회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예술원 각 분과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되며

③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투표시 기표자의 수는 선출인원수 이하로 한다.

④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 개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분과의 경우,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가 회원후보자선출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전문가는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과회장의 승인(분과회원 의견수렴 가능) 및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⑤ 제4조제4항의 경우도 불구하고 불참하는 회원이 외부전문가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 분과회장은 분과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수만큼 외부전문가를 추천,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아 회의가 개회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의3(회원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 ① 각 분과별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에서 심사요구된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종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예술원회장이, 부위원장은 예술원 부회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예술원 각 분과회장이 되고 기타 위원은 예술원 각 분과에서 1인씩 선출한다.

④ 종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투표용지 별지 제5호 서식)한다.

제11조(후보자의 총회 인준) ① 회원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는 심사·의결한 회원후보자를 총회에 보고(별지 제3-1호 서식)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투표용지 별지 제5-1호 서식)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의하여 회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서를 교부한다.

3) 참고자료 2(대한민국예술원 회원선출 개요 및 회원 현황) 참조

기타 위원은 각 분과에서 1인씩 선출하도록 함.

- 종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사·의결한 회원후보자를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음. 총회에서의 의결을 거쳐 회원후보자는 회원으로 선출됨.
- 그러나 예술원의 회원후보자를 추천·심사하는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는 모두 예술원 회원으로 구성되는바, 예술원의 회원 선출 절차가 폐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⁴⁾되어왔음.
- 이에 개정안은 예술원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법률에 규정하고, 그 밖에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총회가 아닌 대통령령을 통해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예술원 회원 선출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외부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술원 회원 선출의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수용한다는 입장임.

4) 이데일리, ‘평생 연금 받는데 선출 과정 불투명… 외부 심사엔 “정치 개입 우려”’, 2024.10.16.
세계일보, ‘끼리끼리 회원 선출, 月 180만원 종신 수당…대한민국예술원 개혁 요구 봇물’, 2021.9.19.

- 대한민국예술원은 일본,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유사 기관⁵⁾과 국내 유사 기관인 대한민국학술원⁶⁾도 신입 회원을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예술원도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⁷⁾한 바 있으므로, 현행 규정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5) 참고자료 3(해외 사례 및 국내 사례) 참조

6) 「대한민국학술원법」 제5조(회원의 선출) ① 회원은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학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部會)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7) 「예술원 회원 선출 규정(예술원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의 개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분과의 경우에는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의 추천으로 외부 전문가가 회원후보자선출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음.

2. 회원의 임기 제한(안 제6조제1항)

가. 개정안 요지

- 종신제로 운영되는 예술원 회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안 제6조제1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u>평생 동안으로 한다.</u> ② (생략)	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 ----- ----- <u>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6조⁸⁾는 예술원 회원의 임기를 종신제로 규정하고 있음.
- 예술원 회원의 임기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종신제) 예우와의 형평성⁹⁾과 예술원 회원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해 2019년 11월 「대한민국예술원법」을 개정, 회원의 결격사유 규정의 신설을 전제로 2019년부터 연임 제한 없는 4년 임기제에서 종신제로

8) 「대한민국예술원법」 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 동안으로 한다.

② 회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9) 「대한민국학술원법」 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 동안으로 한다.

전환하여 시행 중임¹⁰⁾.

- 개정안은 회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임기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신규 회원의 유입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민국예술원**은 예술원 회원의 임기는 회원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여 종신제로 전환한 것으로, 임기 제한은 국가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예우한다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종합해 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2019년에 국가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예우하고 대한민국학술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4년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임기를 종신제로 전환하도록 개정하였다는 점, 일본·프랑스·미국·독일 등도 유사기관의 회원 임기를 종신제로 운영¹¹⁾하고 있다는 점, 문체부와 대한민국예술원의 수용 곤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10) 참고자료 2(대한민국예술원 회원선출 개요 및 회원 현황) 중 제도 변천 참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2018.6.28.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4066호)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6591호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 참조

11) 참고자료 3(해외 사례 및 국내 사례) 참조

3. 회원 수당 지급 폐지(안 제7조제2항 삭제)

가. 개정안 요지

- 회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하던 것을 폐지함(안 제7조제2항 삭제).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회원의 대우) ① (생략)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제7조(회원의 대우) ① (현행과 같음) <삭제>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7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에게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규정(대통령령)」 제2조에 따라 매월 200만원이 정액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음¹²⁾.

12)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회원의 대우)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규정(대통령령)」 제2조(수당의 종류와 범위) ①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는 정액수당으로 매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예술원 연도별 회원수당 지급액 연혁]

(단위 : 만원)

연도	1990년	1992년	1995년	1997년	2001년	2006년	2012년	2024년
수당	40	50	60	100	120	150	180	2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원 및 회원수당 연도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술원운영 (일반회계)	3,067	3,265	3,266	3,218	3,250	3,500	3,425
- 회원정액수당	2,052	2,052	2,052	1,922	1,922	1,922	2,136
(수당 비율)	66.9%	62.8%	62.8%	59.7%	59.1%	54.9%	62.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그러나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유사한 예술 기관의 경우 무보수 명예직의 회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¹³⁾, 예술원의 운영 예산의 상당('25년 62.4%)이 회원의 정액 수당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 등 예술원의 회원 수당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개정안은 예술원 회원에 대한 정액 수당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예술원 회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논란을 해소하는 등 정액 수당 지급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13) 참고자료 3(해외 사례 및 국내 사례) 참조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민국예술원은 아래와 같이 대한
민국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예우한다는 취지에서 현행대
로 회원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개정안
에 대해서는 회원 정액수당 지급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
의 입법취지와 함께 회원 예우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현행 유
지가 필요하다는 문체부와 대한민국예술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예우와의 형평성 문
제와 예술원 회원이 평균 84세 전후의 고령으로 적극적 경제
활동이 곤란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예술 발전에 기
여한 공로를 예우한다는 취지에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대한민국예술원은 예술원 회원에 대한 예우 방식은 예술원의
위상과 직결된 정책 사항으로 회원 수당 폐지 시 회원 위상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국가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예우한
다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회원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
을 제출하였음.

4. 예술원상 선정 절차 규정(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예술원상의 수상자는 회원, 예술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총장 또는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정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 그 밖에 예술원상의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시상) (생략)	제13조(예술원상 선정 및 시상)
<신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예술원상의 수상자는 회원, 예술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총장 또는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u>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정한다.</u>
<신설>	③ 그 밖에 예술원상의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13조¹⁴⁾에 따라 예술원은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예술원상을 수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술원은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규정(예술원규정)」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예술원상의 시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예술원상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의 4개 부문별로 시상되고, 예술원 회장은 매년 예술원 회원, 예술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총장 및 예술원 회장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의 장에게 수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함. 이후 추천을 받은 수상후보자는 부문별로 예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종합심사위원회의 선정으로 총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함¹⁵⁾.

14)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3조(시상) 예술원은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예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15) 「대한민국예술원상시상 규정(예술원규정)」 제3조(수상후보자 자격) ① 예술원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를 하였거나 작품을 제작한 자 또는 이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예술원회원은 예술원상 수상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4조(상의부문) 예술원상은 문학부문, 미술부문, 음악부문, 연극부문, 영화부문, 무용부문으로 구분한다.

제6조(수상후보자 결정과정) ① 예술원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매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예술원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을 예술원 회원, 예술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의

○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 5인 이내를 포함해 10인 이내로 구성되고,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각 분과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종합심사위원회는 예술원 회장·부회장·분과회장을 포함한 예술원 회원 14인 이내로 구성됨¹⁶⁾.

○ 개정안은 예술원상 후보자 추천 및 심사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수상자를 외부위원이 참여한 회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며, 예술원상 시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예술원상 시상의 객관성

총장 및 예술원 회장이 지정하는 해당분야의 예술단체의 장에게 의뢰한다.

② 회장은 추천을 받은 수상후보자를 각 부문별로 예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심사위원회에 심사요구한다.

③ 예술원상은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종합심사위원회의 선정으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16) 「대한민국예술원상시상 규정(예술원규정)」 제7조(부문별 심사위원회 구성) ① 예술원상 수상후보자를 부문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문학부문, 미술부문, 음악부문, 연극부문, 영화부문, 무용부문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부문별 심사위원회 위원은 예술원회원 선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각 분과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분과회장으로 한다.

제7조의2(부문별 예비심사) ① 각 분과회는 수상 후보자의 자격 여부, 요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 위원은 각 분과회의 추천을 받아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 5인 이내를 포함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한다.

③ 부문별 예비심사 결과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결정한다.

④ 부문별 예비심사에서 부문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수상후보자의 인원은 수상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한다.

제8조(부문별심사) ①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수상인원의 2배수 이내의 수상후보자를 시상일 60일 전에 선정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 심사요구한다.

②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예술원회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하 생략)

제9조(종합심사위원회 구성) ①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요구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종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예술원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술원 부회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예술원 각 분과회장이 되고 기타 위원은 예술원 각 분과에서 선출한다.

제10조(수상후보자 선정)

① 종합심사위원회는 각 부문별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요구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재심사하여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② 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하 생략)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자구 수정 사항으로 예술원상 심사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정안 제5조제1항의 회원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원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회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수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임.
- **대한민국예술원**은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규정」에서 예비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외부전문가가 예술원상 심사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바,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79

참고 1

대한민국예술원 개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설립목적(대한민국예술원법 제1조)

-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

□ 기 능(대한민국예술원법 제2조)

-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 국내·외 예술교류 및 행사 개최
-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여
-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 주요연혁

- 1952. 8. 17. 문화보호법 공포(법률 제248호)
- 1954. 7. 17. 예술원 개원(문교부 소속)
- 1988. 12. 31. 대한민국예술원법 제정(법률 제4046호/회원정원 75명)
- 1996. 12. 30.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법률 제5209호/회원정원 100명)
- 2019. 11. 26.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법률 제16591호/회원 종신제)
- 2021. 5. 18.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법률 제18150호/서면의결권)

□ 조직현황(대한민국예술원법 제3조, 제16조)

-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정원 100명, 현원 77명) * '25.2월 기준, 평균연령 84세

분과별	계	문학분과	미술분과	음악분과	연극분과	영화분과	무용분과
정원/현원	100/77	28/23	25/17	22/18	9/7	8/5	8/7

- 예술원사무국 직원(정원 13명, 현원 13명)

구분	계	고공단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공무직
정원/현원	13/13	1/1	0/1	2/1	2/2	2/2	2/3	2/3	2/0	1/1

□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비 기준)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일반회계	3,265	3,266	3,218	3,250	3,500	3,425

* 회원수당 감액(1,922백만원 21년 대비 ▲130백만원 감(회원 정원의 89%분 예산 반영) / '23~'24년 전년동)

** 회원수당 증액(2,136백만원 24년 대비 214백만원 증(수당 단가 인상), 70주년 행사 종료▲250백만원 순감)

참고 2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선출 개요 및 회원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법적 근거

○ 대한민국예술원법 제5조 (회원의 선출)

* 대한민국예술원법 제5조(회원의 선출) ①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 예술원회원 선출규정 (예술원규정 제94호, '24.12.9 개정)

* 대한민국예술원법 제5조에 따른 후보자 추천권자,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 구성 및 의결방식, 후보자 예술경력 범위 등 규정

□ 자격 및 임기

○ 자격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경력이 30년 이상인 자로서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대한민국예술원법 제4조)

○ 임기 : 종신제 (대한민국예술원법 제6조) *'19년 개정(4년(연임가능)→종신제)

□ 선출 절차

○ 공고(3월~4월) → 후보자 추천(4월~5월) → 분과별 회원후보자 선출위원회(5월)
→ 회원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5~6월) → 총회(6월) → 통지서 교부(7월 초)

회원후보자 추천 (4~5월)	▷ 추천권자: 예술원회장이 지정한 국립문화예술기관의 장(8개)·예술단체의 장(41개)·예술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교) 총장(188개) * 회원의 후보추천권 자율 배제 (24.2.28. 회원선출규정 개정) ▷ 제출서류: 회원후보자 추천서, 주요경력 증빙자료 등
회원후보자 선출위원회 (5월)	▷ 구성: 분과회원 전원(위원장은 분과회장) *개의정족수 부족시 불참회원이 외부 전문가 추천 가능, 불참회원이 미추천 시 분과회장이 외부전문가 추천(24.12.9. 회원선출규정 개정) ▷ 의결: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 ▷ 심사요구: 회원후보자 선출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 심사요구
회원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 ^{신설} (5~6월)	▷ 구성: 위원장 (예술원 회장), 부위원장 (부회장), 당연직 위원 (각 분과회장), 기타 위원 (각 분과회원 1인 선출)(24.12.9. 회원선출규정 개정) ▷ 의결: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 ▷ 총회보고: 회원후보자 총회 보고
총회 (6월)	▷ 구성: 예술원 회원 전원 ▷ 의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 제도 변천

법률근거	회원구분	임기	임명방법	정원	비고
문화보호법 제정 (법률 제248호) 1952. 8. 7	선거회원	3년	등록예술인 선거	25명	
	추천회원	6년	총회 추천	10명	
	임명회원	종신	원제청→대통령 임명	5명	
문화보호법 개정 (법률 제546호) 1960. 2. 4	추천회원	6년	위와 상동	50명	선거회원 폐지
	임명회원	종신	위와 상동		
문화보호법 개정 (법률 제345호) 1981. 12. 31	원로회원	종신	대통령 승인을 얻어 장관이 추대	15명	71세 이상
	정 회 원	4년	총회추천→장관제청 →대통령 임명	50명	정년 70세
	준 회 원	4년	총회추천→회장임명	150명	50세 이하
대한민국예술원법 제정 (법률 제4045호) 1988. 12. 31	회 원	종신	기존 원로회원(정원 외)	(12명)	정년제폐지 · 회원단일화
		4년 (연임 가능)	총회 인준	75명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 (법률 제5209호) 1996. 12. 30	회 원	4년 (연임 가능)	위와 상동	100명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 (법률 제16591호) 2019. 11. 26	회 원	종신	위와 상동	100명	

* 총회의결에 의한 회원선출 방식 '88년부터 시행'81. 문화보호법 → '88. 대한민국예술원법)

** (한국·일본) 회원결정권이 각 분과별로 주어지고 총회는 그것을 승인하는 방식,
(프랑스·미국·독일) 각 분과,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원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

□ 분과별 회원 통계 (최근 5년)

(단위: 명)

연 도	문학분과				미술분과				음악분과				연극영화무용분과			
	정원	현원	결원	선출	정원	현원	결원	선출	정원	현원	결원	선출	정원	현원	결원	선출
2021	28	27	1	1	25	16	9	0	22	22	0	3	25	23	2	0
2022	28	26	2	0	25	15	10	0	22	22	0	0	25	22	3	0
2023	28	23	5	0	25	14	11	0	22	21	1	0	25	19	6	0
2024	28	23	5	1	25	17	8	4	22	19	3	0	25	20	5	4
2025.2.	28	23	5	0	25	17	8	0	22	18	4	0	25	19	6	0
평 균	28	24.4	3.6	0.4	25	15.8	9.2	0.8	22	20.4	1.6	0.6	25	20.6	4.4	0.8

참고 3

해외 사례 및 국내 사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해외 사례

구분	대한민국 예술원	일본예술원	중국예술원	프랑스	독일	미국
성격	국가기관	국가기관	정부등록 단체	대통령 보호 가구나 정부 소속이 아닌 독자 기구	법인	비영리재단 법인
재원	전액국고	전액국고	회원회비, 예술원 활동 수입, 후원금	뮤지엄 입장료, 기념품 판매 수입, 후원 금 등	연방정부 지원금 및 후원금	회원회비, 후원금
조직	6개 분과	3개부 18개 분과	4개 분과	9개 분과	6개 분과	3개 분과
회원 수	100명	120명	정원 없음	59명	500명	250명
임기	종신제	종신제	종신제	종신제	종신제	종신제
수당	지급	지급	확인 안됨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회원 선출	회원투표 (외부심사×)	회원투표 (외부심사×)	회원투표 (외부심사×)	회원투표 (외부심사×)	회원투표 (외부심사×)	회원투표 (외부심사×)

□ 국내 사례

구분	예술원	학술원
정/현원	100명/77명	150명/130명
조직	6개 분과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무용	2부 11개 분과 인문사회과학부(6개) 자연과학부(5개)
회원 선출	① 후보자 추천→ ② 분과별 회원 후보자 선출위원회→ ③ 회원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 ④ 총회	① 후보자 추천→ ② 분과별 회원 심사위원회→ ③ 부회 심사위원회 → ④ 총회
수당	월 200만원	월 200만원

[출처] 대한민국예술원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1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한민국예술원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2008)